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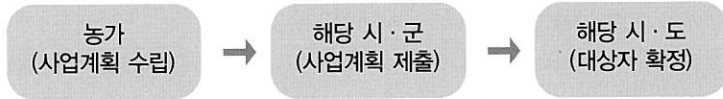
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(양계 및 오리) 알아보기

농림수산식품부

■ 지원대상농가(양계 및 오리 등)

- 양계, 오리 : 전업규모 이상 농가
- 개별 종축장 :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, 종오리장, 정액 등 처리업체
- 한센인 정착촌 : 전국 9개 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

■ 지원 절차



■ 사업지원 농가 규모 및 지원액(양계 및 오리)

| 구분 | 사육시설 면적당(m ²) 지원상한액 | 축사 및 축산시설(백만원) 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보조+융자(전업농) | | 이차보전(기업농) | | |
| | | 상한액 | 대상농가 (축사면적) | 상한액 | 대상농가 (축사면적) | |
| 양계 | 산란계 | 602천원/m ² | 1,150 | 1,380~2,300m ² | 5,000 | 2,300m ² ~ |
| | 육계 | 304천원/m ² | 850 | 1,380~2,300m ² | 3,000 | 6,600m ² ~ |
| | 육용종계 | 380천원/m ² | 1,150 | 3,300~6,600m ² | 3,000 | 1회 입란규모 600천개~ |
| | 부화장 (육용종계용) | 1,260천원/m ² | 1,350 | 1회 입란규모 300~600천개 | 3,000 | 2,460m ² |
| 오리 | 육용오리 | 304천원/m ² | 800 | 1,230~2,460m ² | 3,000 | 2,631m ² |
| | 종오리 | 380천원/m ² | 1,100 | 1,665~3,300m ² | 5,000 | 1회 입란규모 200천개~ |
| | 부화장 | 1,260천원/m ² | 1,350 | 1회 입란규모 100~200천개 | 3,000 | 1,080m ² |

■ 지원 내역

- 축사, 축사시설, 축산시설(방역시설, 생산성 향상 시설 등) 등
 - 축사시설 : 축사내부의 시설(급이·급수·전기·환기 시설 등)
 - 축산시설 : 축사외부의 시설(방역·퇴비장·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)

■ 지원 규모

- 2011. 12. 31이전 축사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
 -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(전업농 상한액의 50% 이내)까지 지원 가능

*전업농 기준 :

- 양계(닭) 30,000수 이상(육용종계 15,000수 이상,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)
- 오리 5,000수 이상(종오리 5,000수 이상, 오리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)

■ 준수사항

- 소독시설 설치
- 차량 소독조 설치(농장 정문 입구)
- 휴대용 방역기 구비
- 방역 울타리 설치
- HACCP 인증 의무화
- 경영기록부 작성

■ 우선지원

-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
-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
-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 농장 지정 농가(전업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)

■ 지원제외

-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은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
-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(축사 포함)은 제외
- 무허가축사(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)
 - 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(시설)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
-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

■ 문의 : 해당 시·군(시·도) 축산 담당부서 ☎